

대통령령

수 의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 이유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전자처방전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 조문 조정 및 용어를 간결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12조2 신설)

- 의사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을 발급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신설

나.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안 제13조)

수의사법 제1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현행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사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위임받은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

다.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제2호)

과태료를 규정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설정

라. 법률 용어 명확화 및 간결화

용어 명확화, 간결화를 위한 법개정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23.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중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으로 하고, 같은 표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
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별표 제2호 아목을 차목으로 하고,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
지로 하며, 같은 표 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아목과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 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	20	40	80
---	----------------	----	----	----

자.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 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			
1)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0	40	80
2)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40	80	100

별표 제2호하목 중 “법 제17조의3제1항”을 “법 제17조의3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표 과목, 하목, 거목부터 버목까지 및 서목을 각각 거목, 너목, 더목부터 어목까지 및 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 .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1호	50	100	200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20	40	8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2	20	40	80
라.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3	20	40	80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4	20	40	80
바.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5	20	40	80
사.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6	20	40	80
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	20	40	80
자.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			
1)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20	40	80
2)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40	80	100
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10	20	40
카.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7	14	28
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70	140	280
파.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0	20	40

하. 법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로서	법 제41조제2항제4호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한 경우		20	40	80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한 경우		7	14	28
거.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의2	7	14	28
너.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5호			
1)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	10	20
2)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20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7	14	28
더. 법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0	20	40
러.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	5	10	20
머.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	20	40	80
버.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	10	20	50
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7호	7	14	28
어.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10	20
2)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14	28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9호	10	20	4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처방관리시스템을 통</u> <u>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u> <u>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u> <u>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u> <u>”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말</u> <u>한다.</u>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u>법 제17조제4항</u> 에 따른 동물병 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u>법 제17조제5항</u> ----- ----- --.